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6-30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9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에 따라 개정하는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관련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20.

우정사업본부장

1. 개요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에 따라 공고 예정인 특별인출권 조정 환율(SDR)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고시 개정 이후 신속하게 조정 환율(SDR)을 공고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2. 내용

가. 특별인출권 환율

통화명	적용 환율	화폐 단위
SDR(Special Drawing Rights)	1,998	원(Won)

나. 고시 개정 이후 공고 환율 적용 예정일 : ’26. 4. 3.(금)

※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의 개정 이후 확정 환율 공고 예정

3.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044-200-8288)